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57
----------	-----

제출연월일 : 2008. 6. 2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관련 법령에 맞게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자격을 정비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8. 5. 23. ~ 6. 1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자치구청장 또는 인접 시·군의 시장·군수
3. 물류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운송주차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송물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화물유통촉진법</u>」 제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시 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u> 2. <u>물류시설등의 집단화</u> 3. <u>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u> 4. <u>물류표준화</u> 5. <u>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u> 6. <u>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u> 7. <u>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u> 8. <u>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u> 9. <u>기타 물류산업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17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u>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u>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u></p>	<p>제1조(목적) ----- 「<u>물류정책기본법</u>」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p> <p>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u> 2. <u>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3. <u>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u> 4. <u>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u> 5. <u>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 <p>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2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u>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u>위원장이 위촉한다.</u></p>

현행	개정안
<p>1. 대전광역시의회의원</p> <p>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p> <p>3. 물류정책·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p>	<p>1. 대전광역시의회의원</p> <p>2. 대전광역시 <u>자치구청장 또는 인접시·군의 시장·군수</u></p> <p>3. <u>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u></p> <p><삭제></p> <p>※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함</p> <p><삭제>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위원회 회의를 규정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함</p>

현행	개정안
<p>제6조(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삭제></p> <p>※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보궐위원의 임기 및 제16조에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함</p>
<p>제7조(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p> <p>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p>	<p><삭제></p> <p>※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위원의 해촉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함</p>
<p>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민간인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삭제></p> <p>※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등을 규정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함</p>
<p>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p> <p>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제4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간사는 <u>운송주차관리과장</u>이 되고 서기는 <u>운송물류업무 담당사무관</u>이 된다.</p>
<p>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삭제></p> <p>※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수당 등을 규정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함</p>
<p>제11조(운영세칙) (생략)</p>	<p>제5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p>

관계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2. 해당 시·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년 7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I.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24일
3. 상 정 일 자 :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8. 7. 22)상정, 심사,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교통건설국장 김의수)

1. 제안이유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관련 법령에 맞게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자격을 정비함(안 제3조).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환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물류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인용조문을 정비함.
-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을 정비함.
-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자격 등을 정비함.
-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가산 및 서기에 대하여 정비함.
-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함.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 위원회 구성 등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물류정책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우리시가 물류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수립과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물류

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등 위원회의 기능강화와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 토 론 요 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57
----------	-----

제안연월일 : 2008. 7. 22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2008. 2. 4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조례인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하여 안건이 접수되었으나, 2008. 7.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시행됨으로서 시행내용과 부합되도록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수정 함(안 제3조, 제4조)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중 “운송주차관리과장”을 “운송주차과장”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p>제3조(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기획관리실장, <u>경제통상국장</u>, 교통 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3. (생략)</p> <p>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간사는 <u>운송주차관리과장</u>이 되고 서기는 운송물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p>	<p>제3조(구성 등) ① ~ ② (당초와 같음) ③기획관리실장, <u>경제과학국장</u>, 교통 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3. (당초와 같음)</p> <p>제4조(간사 및 서기) ① (당초와 같음) ②간사는 <u>운송주차과장</u>이 되고 서기는 운송물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p>